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94호
----------	------

2017. 12. 20.

건명	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예산담당관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11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1. 17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채 ZERO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 를
“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 로 개정함
- 나. 지방채가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신설 (안 제2조제2항)
- 다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 (안 제2조의2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채 ZERO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